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(2017. 11. 2. ~ 11. 13.)

의원발의 조례안 (조례 3건)

거창군의회

= 목 차 =

의안번호	건	명	쪽수
2017-114	거창군 마을세무사	운영에 관한 조례안	1
2017-115	거창군 4에이치육성	지원 조례안	9
2017-116	거창군 범죄예방 도	시환경 조성 조례안	12

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(권재경 의원 대표 발의)

발의연월일	
발 의 자	권재경, 이홍희, 변상원, 최광열, 김향란, 표주숙, 강철우, 박희순, 이성복, 의원 (9인)

1. 제안이유

O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·해촉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위·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)
- 라.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9조, 제22조

「거창군 포상 조례」제2조, 제5조

나. 예산조치: 2018년 예산반영 검토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재무과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7. 10. 26. ~ 10. 30.
 - (나) 예고결과: 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도내 제정현황(4): 거제시, 양산시, 의령군, 함안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·해촉 및 임기) ① 군수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(이하 "마을세무사"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
 -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.
 -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 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.
 - 1.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
 - 2.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
 - 3.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
 - 4.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
- 제3조(마을세무사의 역할)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.
- 제4조(이용대상)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, 취약계층,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 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- 제5조(상담방법)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·팩스·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.
 - 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,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"찾아가는 마을세무사"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.
- 제6조(상담실적 관리)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·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(포상)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을 「거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8조(수당 등)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개인정보 수집 등)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,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 ·팩스·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촉 장

제 - 호 위 촉 장
세무사 ○ ○
귀하를 「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거창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. (위촉기간: ~)
거창군수 ○ ○ 직인

[별지 제2호서식]

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

		상 [담 내 용	(건)			상 (담 방 법	(건)	
구 분	계	국 세	지방세	국 세 및 지방세	불복 청구	계	전화	방문	메일	팩스
년 분기			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행정안전부(지방세정책과)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 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	
성명, 사무실 전화번호, 휴대전화 번호, 전자우편, 팩스번호	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	2년		

- 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, 아니오)
- 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 항목	보유기간
전국 자치단체(243개),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(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)	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 세무사에게 제공	성명, 사무실 전화번호, 휴대 전화번호, 전자 우편, 팩스번호	2년

- 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. 아니오)

<기타 고지 사항>

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, 웹사이트, 언론보도 자료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담당지역 경상남도 거창군

성 명 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수 귀중

[별지 제4호서식]

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

[[[ሷ 수	번 호				5 1	- .	_					접 수	- 일
N	ο.		ᅦᅦ	무	상	남	기	독		가	_			
상 종 (V	담 류 표시)	국지방지방		())		상 [방 [(V표	기) 컴 티	。 팔 。 전	백스 전화	상담 상담 상담 상담	() ()		
신	면	씽	명											
청	성		명											
인	연	락	처											
	상	담 내용	2											
	상	담 의견	<u> </u>											
*	특이.	사항이 있	시 을시 같	이 기지	H									
								거창	군 (마을	세무시	}	((인)

관련법령

□ 「 지방자치법 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. (생략)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2. ~ 6. (생략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 거창군 포상 조례 」

제2조 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군민("외국인을 포함한다." 이하 같다) 및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5조 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- 1.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- 2.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- 3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

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(이성복 의원 대표 발의)

발의일자	2017. 10. 23.
발 의 자	이성복, 김종두, 표주숙, 이홍희, 강철우, 박희순, 의원 (6인)

1. 제안이유

○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4에이치활동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.(안 제2조)
- 나.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.(안 제4조)
- 라.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함.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제2조, 제5조 등
- 나. 예산조치: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7. 10. 26. ~ 10. 30.
 - (나) 예고결과: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 - (6) 도내 제정현황(2) : 경상남도, 사천시

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제5조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심을 배양 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"4에이치활동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- 1.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
- 2.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
- 3.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·국외 연수
- 4.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3조(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경비지원)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사업계획의 제출)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 관련법령 발췌

□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 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4에이치"란 명석한 머리[Head, 지육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덕육], 부지런한 손[Hands, 노육] 및 건강한 몸[Health, 체육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 [4-H]을 말한다.
- 2. "4에이치활동"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- 가.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·문화활동,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
- 나. 4에이치 이념을 확산·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
- 다.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
- 라.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
- 제3조 (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)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4조 (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)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.
 - 1.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
- 2.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- 3.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
- 제5조 (경비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

- 제5조(경비지원)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·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.

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(최광열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17-116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	2017. 10. 23.
발 의 자	최광열, 이홍희, 권재경, 김향란, 표주숙, 강철우, 변상원 의원 (7인)

1. 제안이유

O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,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, 제5조)
- 다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준, 적용범위를 정함.(안 제6조, 제7조)
- 라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9조,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도시건축과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7. 10. 26. ~ 10. 30.

(나) 예고결과: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제정현황(7): 김해시,통영시,사천시,밀양시,거제시,양산시,고성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

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"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"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.
- 2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, 울타리, 조경·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3.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.
- 4.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, 공원, 휴게시설,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.
- 5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.

- 제4조(책무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「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 - 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 - 2.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6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우선 적용 범위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 환경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
 - 2.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
 - 3.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
 - 4.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
- 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
- 2.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
- 3.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
- 4. 범죄예방 도시화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
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1조(홍보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~ 라. (생 략)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사. ~ 거. (생 략)

5. ~ 6. (생략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